
섹스로봇과 상징적 재현의 문제*

신상규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섹스로봇에 대한 리처드슨의 비판
- III. 상징적 결과 논증
- IV. 상징 논증의 평가
- V. 상징의 개선
- VI. 맺는 말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인용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던 듯하다. 리얼돌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들은 앞으로 등장할 섹스로봇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반론들이다. 본 논문은 섹스로봇과 관련지어 위와 같은 반론들을 검토하고, 섹스돌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을 기금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캐슬린 리처드슨(Kathleen Richardson)의 견해를 중심으로 섹스로봇의 도입과 관련된 찬성이나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평가한다. 리처드슨의 비판이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섹스로봇이 갖는 상징성이다. 섹스로봇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며, 성과 관련된 동의 규범을 무시하는 상징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상징성에 입각한 섹스로봇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지를 고민한다.

주제어: 리얼돌, 섹스로봇, 상징적 재현, 상징적결과논증, 동의규범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얼돌은 지금까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에 리얼돌 수입업자가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원고가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리얼돌의 합법적인 수입과 판매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심인 고등법원은 리얼돌을 ‘성기구’로 분류하고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는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라며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다.¹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리얼돌 ‘합법화’에 대하여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논거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리얼돌은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며,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
- 리얼돌은 ‘동의’의 절차를 무시한 ‘강간 문화’의 연장이며,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중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하라. 박태인, 「리얼돌 판매길 열어준 대법…‘성기구’ 24번 언급에 이유있다」, 『중앙일보』, 2019.8.1. (<https://news.joins.com/article/23541497>, 2020년 9월 27일 접속); 유지영,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 23만명 돌파… “여성혐오와 직결된 물건”」, 『오마이뉴스』, 2019.8.2. (<http://omn.kr/1k9nc>, 2020년 9월 27일 접속)

가를 가져올 것이다.

- 특정인의 얼굴을 본떠 리얼돌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별 여성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훼손할 수 있다.
- 아동의 신체를 닮은 리얼돌이 제작·유통될 수 있다.

성인용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던 듯하다. 리얼돌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들은 단순히 리얼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섹스로봇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반론들이다. 본 논문은 섹스로봇과 관련지어 위와 같은 반론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먼저 캐슬린 리처드슨(Kathleen Richardson)의 견해를 중심으로 섹스로봇의 도입과 관련된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영국 드몽포르 대학교의 리처드슨 교수는 섹스로봇의 도입에 반대하는 캠페인(Campaign Against Sex Robot)을 촉구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² 리처드슨이 제기하는 비판 중 일부는 리얼돌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 논점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리얼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정당한 지적이라면, 이는 섹스로봇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섹스로봇과 관련된 쟁점들을 평가하는 일은 리얼돌에 관한 논점들의 평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II. 섹스로봇에 대한 리처드슨의 비판

먼저 섹스로봇(혹은 섹스봇)이 무엇인가를 정의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해보자. 다나허(Danaher)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성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공물을 섹스로봇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³

2. Kathleen Richardson,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Parallels Between Pro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x Robots", *SIGCAS Computers & Society* Vol. 45 No. 3, 290~293쪽. 리처드슨은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리얼돌과 관련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유지영, "섹스돌이 성범죄 감소시킨다? 구매자들이 뭐라는지 보라", 『오마이뉴스』, 2019.8.12. (<http://omn.kr/1kejf>, 2020년 9월 27일 접속)

3. Danaher J., "Should We Be Thinking about Robot Sex?" in Danaher & McArthur, 2017, p. 3. 다나허는

- 1) 인간과 비슷한 외양
- 2) 인간과 같은 움직임이나 행동
- 3) 일정 정도의 인공지능

섹스로봇은 그 외양이나 행동, 동작에서 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존재를 재현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춘 존재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섹스로봇은 기존의 성도구나 인형과는 구분될 수 있다. 바이브레이터와 같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기구는 인간 신체의 일부만을 재현한다. 리얼돌과 같은 섹스인형은 비록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능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섹스봇과 구분된다.

섹스봇의 도입에 반대하는 캐슬린 리처드슨의 비판을 다나히, 어프, 샌드버그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⁴

- ① 섹스노동자(매춘부)와 성매수자의 관계는 여러 이유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 ② 섹스봇과 사용자의 관계는 섹스노동자와 매수자의 관계와 유사하다.
- ③ 따라서, (유비에 의해서) 섹스봇과 인간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 ④ 따라서, 섹스robots의 도입에 반대해야 한다.

리처드슨의 논증은 섹스봇과 사용자의 관계를 섹스노동자와 성매수자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매매에 대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적 논점이 섹스봇-인간 사용자 사이의 관계로 전이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비판의 많은 부분을 매춘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할애한다. 리처드슨의 이러한 논의 방식은 그녀의 논증이 섹스봇의 도입에 찬성하는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의 논증을 비판의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작 섹스봇이란 인공물 자체의 본성이나

가상(virtual)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형상을 체현하는 경우도 섹스봇의 사례로 포함시키고 있다. Oculus Rift와 같은 가상시각 장비와 촉각적 감각을 제공하는 인공 성기를 결합하여 섹스봇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기술을 매개로 두 사람이 원격으로 섹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이미 시판 중에 있다.

4. Danaher, J. & Brian Earp & Anders Sandberg, "Should We Campaign Against Sex Robots?" in Danaher and McArthur, 2017, p. 48.

그 도입이 함축하는 의미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레비는 만약 섹스로봇이 개발된다면 초기 단계에는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본에서 운영되는 섹스돌 임대사업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이와 유사한 섹스로봇 임대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한다.⁵ 레비는 남성 성구매자가 섹스노동자의 서비스를 원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⁶ 첫째, 여러 섹스 상대를 경험하는 기회뿐 아니라 섹스 경험 자체의 다양성(variety)을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매매는 목적이 단순하고 분명하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감정적인 개입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나 제약을 회피(Lack of Complications and Constraints)할 수 있다. 셋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못생긴 외모나 신체적 장애, 심리적 불안정, 사회적 기량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Lack of Success with the Opposite Sex). 매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성과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비는 섹스로봇이 섹스 서비스를 원하는 이러한 3가지 이유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충분한 성적 쾌락과 감정적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섹스로봇으로 인간 섹스노동자를 대체하는데 큰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섹스로봇을 적극 활용하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춘과 관련된 인신매매나 약물중독, 조직범죄의 감소, 그리고 AIDS나 성병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서 성노동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이다.

리처드슨의 논증에 대한 평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전제 ①, ②의 참(혹은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①+②에서 ③으로 그리고 ③에서 ④로 이어지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관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리

5. 레비의 글에는 2005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섹스포 소식과 함께 한국의 수원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유사한 섹스돌 임대사업이 시간당 25000원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6. Levy (2008)과 Levy (2012) 참조. 여성의 경우에 성구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접근 가능한 자료들에 따라 때 복잡성이나 제약의 회피, 이성과의 성경험 기회 확보 등이 주요 이유로 드러나 남성들이 선택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처드슨의 논증은 일단 유비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은 많은 부분 섹스봇과 섹스 노동자 사이에 올바른 유비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에 의존한다.

먼저 전제들의 참·거짓 여부부터 따져보도록 하자. ①의 전제는 성매매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부정적 현상임을 주장한다. 리처드슨의 입장은 매춘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다. 리처드슨은 “성 노동(sex work)”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에도 반대한다. 이러한 표현의 사용이 매춘을 노동시장에서 허용 가능한 합리적 선택지의 하나로 정상화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그녀가 매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노동자에 대한 주체성 부정과 대상화이다. 리처드슨에 따르면, 매춘에서는 성노동자와 매수자 사이에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가 성립하며, 그 결과 구매자에게만 주체성이 귀속되고 성노동자는 일종의 사물로 환원된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춘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독립성을 갖춘 인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존재(실존) 양식을 합법화한다.”

리처드슨은 또한 매춘이 ‘동의의 부재(the absence of consent)’ 속에서 일어나며, 대상화에 따른 공감(empathy)의 결여는 종종 범죄와 폭력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리처드슨에 따르면, 매춘사업에서 인신매매는 흔한 일이며, 이는 많은 수의 성노동자가 어린 소녀나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EU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춘 산업의 수익 규모는 연간 1,860억 달러에 이르며, 종사자의 수는 4천만 명을 넘는다. 이들 중 90%는 포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75%가 13~25세 사이라고 한다.⁷

리처드슨은 섹스 로봇의 출현이 성매매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레비의 예측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매춘과 포르노 생산도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섹스 산업의 팽창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1990년대에는 5.6%의 남자들이 섹스를 돈으로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00년에는 그 비율이 8.8%로 증가했다고 한

7. Kathleen Richardson, 앞의 글, p. 290.

다. 리처드슨은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섹스로봇이 성 구매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우리 사회는 매춘 혹은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성매매는 성착취나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처럼 온갖 부정적 문제들로 얽혀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에는 분명 우려할만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성숙한 성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평가도 가능하다.

다나허 등은 성매매에 대한 리처드슨의 견해가 상업적인 성적 관계와 비상업적 성적 관계에 대한 거짓 이분법에 기반하여 성노동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매우 편향적인 견해라고 비판한다.⁸ 권력의 비대칭성이란 측면에서 성적 관계는 상업적 맥락을 떠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며, 리처드슨이 말하는 매춘의 나쁜 특성들로 거론되는 현상들은 비단 성매매 관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적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도 리처드슨은 매우 보수적인 성윤리에 입각하여, 마치 성적 대상화나 폭력의 문제가 상업적인 성적 관계에만 국한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성노동자와 고객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성매매라 할지라도 단골고객과 성노동자 사이에서 상호존중이나 이해가 생겨날 수 있고,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진정성(authenticity)”, 친밀감(intimacy), 상호성(mutuality)을 추구하는 보통의 “평균적인” 남성들일 수 있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강간 판타지를 실현하려고 한다거나 동의 없는 폭력적 섹스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괴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폭력은 매우 일부의 현상이며, 대부분의 성거래는 비상업적인 성적 관계에서처럼 폭력이나 불상사 없이 일어난다.

매춘과 연관된 인신매매나 폭력은 오히려 성매매 자체에서 기인하기보다 성매매 금지에 따른 음성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애초에 성적 서비스를 팔려고 했던 동기나 그것을 유발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8. Danaher, J. & Brian Earp & Anders Sandberg, 앞의 글, p. 53.

아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금지는 음성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현실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매춘을 범죄화함으로써 다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활동가가 성매매의 금지가 아니라 합법화와 규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매매가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논의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의 관심사는 섹스로봇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점이 섹스로봇의 도입 여부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다나히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는 리처드슨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매매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 논의의 주안점은 아니므로, 논의 전개를 위하여 일단 성매매에 대한 리처드슨의 비판, 즉 전제 ①을 수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①로부터 ③의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②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전제 ②는 섹스봇과 섹스 노동자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한다. 이는 성매매 모델을 통해 섹스봇을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매매와 섹스 로봇 사이의 유비는 리처드슨이 아니라 레비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레비의 경우, 그 주장의 요점은 섹스봇을 활용함으로써 인간 성매매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성매매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성적욕구의 해소라는 목적은 똑같이 달성하지만, 섹스봇과 인간 성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차이 때문에 인간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섹스봇의 경우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설령 성매매 관계와 섹스봇-사용자 관계에서 모종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섹스봇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③의 결론을 입증하기에 적절한 유사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처드슨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③의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성매매 관계와 섹스봇-사용자 관계 사이의 '부정적인' 유사성이다. 그런데 리처드슨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많은 문제가 섹스 로봇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가령 성매매 산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인신매매, 약물중독, 폭력, 조직범죄 등은 섹스로봇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섹스노동자는 존엄성과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인격적 존재이지만, 섹스로봇은 기계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대우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섹스로봇은 도덕적 피해자가 될 수 없기에 그것에 대한 태도나 대우를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인다.

III. 상징적 결과 논증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리처드슨의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일까? 한 가지 유력한 방안은 섹스로봇 자체에 대한 처우가 아니라, 섹스로봇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인간들 간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 즉 섹스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도록 조장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리처드슨에 따르면 성매매는 공감(empathy)을 결여한 채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상화하는 위험한 실존양식이다. 그녀의 주장을 따르자면, 섹스로봇은 결국 섹스노동자와 구매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로봇과 인간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적 경험으로 재현하려는 시도이다. 성매매의 경우,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매자의 의지나 욕구만이 중요하며 성노동자의 요구나 필요는 고려되지 않고 그 결과 성노동자는 대상화되고 도구화된다.

섹스로봇은 그 본질이 섹스 도구이자 인격체가 아닌 사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역학을 상징적으로 모방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승인하는 표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섹스로봇이 특정 유형의 문제시되는 성적 상호작용이나 그와 연관된 성적 규범을 장려하는 상징으로 작용하며, 성적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나 잘못된 성문화의 조장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다나히는 섹스로봇이 상징으로서 갖는 의미 혹은 그 상징이 산출하는 결과를 근거로, 섹스로봇에 반대하는 이러한 논증을 “상징적 결과 논

증(Symbolic Consequence Argument)”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⁹

상징과 관련된 섹스봇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섹스로봇이 성 규범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왜곡된 상징 자체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섹스로봇을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섹스로봇이 성적 파트너의 외모나 신체를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가 여성이듯, 현재 출시가 예상되는 섹스로봇은 극소수 남성 로봇도 있지만 거의 다 여성에 남성을 수요자로 상징한 여성 로봇이다. 이 로봇들은 트루컴패니언(TrueCompanion) 사의 대표적인 리얼돌 록시(Roxxxy)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이나 복장을 일정한 전형에 따라 과장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로봇이 가진 이러한 외형적 특성 자체가 신체 형태, 복장, 소리, 움직임 등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에 문제시되어 온 성규범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시 되는 상징은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강간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동의”의 표현이나 기준이 논란이 된 여러 사건이 있었다. 최근의 동향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적 동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노출이 많은 복장이나 추파를 던지는 행동이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곧 ‘예’를 의미한다는 식의 남성중심적 편견이 동의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성적 접촉은 동의에 대한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긍정적 신호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저항의 부재나 복장, 추파 행위로부터 동의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적 동의”에 대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섹스로봇은 특정한 스타일의 여성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나 복종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굳이 성

9. Danaher J., “The Symbolic-Consequences Argument in the Sex Robot Debate” in Danaher & McArthur, 2017, p. 103.

적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섹스로봇이 그 행동이나 움직임에서 순종하거나 복종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시지아나 구티우(Sinziana Gutiu)는 섹스로봇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이 동의의 규범이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일련의 잘못된 믿음을 표상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섹스로봇은 언제나 동의하는 섹스파트너이며, 사용자가 로봇 및 성적 상호작용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섹스로봇은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피하면서, 성적 관계에서 소통과 상호존중 그리고 타협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다. 섹스로봇은 사용자에게 강간에 대한 공상을 물리적으로 연기하고 강간에 대한 신화(*rape myths*)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섹스와 친숙성(친밀한 접촉)을 비인간화(*dehumanize*)해 버린다.¹⁰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서, 섹스로봇이 체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상징들은 어떤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징이 초래하는 사회적 차원의 해악이다. 리처드슨이나 구티우 등에 따르면, 섹스로봇의 개발이나 사용은 성차별 문화나 여성 혐오,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는 부정적 신호를 사회 전체에 발신하며, 이를 통해 성적 동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해로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강화한다. 즉, 섹스로봇은 여성을 남성의 요구에 언제나 순응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의의 표준에 대한 최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잘못된 태도를 영속화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 혐오와 같은 굴절된 인식이나 문화에 기여하고, 기존의 해로운 젠더적 권력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수준에서 발생하는 해악을 들 수 있다. 기티우는 섹스로봇의 반복된 사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비도덕적인 성적 규범을 내면화하게 해서 자신의 도덕적 품성을 타락시키고, 타인과의 성적 관계에서도 공감이나 상호성, 타협의 필요성을 피하게 하는 악영향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수준의 해악이 개인의 차원에서 성에 대한 도덕적 인식뿐 아니라 타

10. Sinziana Gutiu, "Sex Robots and the Robotization of Consent," We Robot Law Conference Miami (2012), Dauaher & McArthur, 2017, p. 108에서 재인용.

인을 대하는 행동을 통해 구체화 되는 것이다. 즉 섹스로봇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감 없이 마치 섹스로봇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 하리라는 것이다.

다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섹스로봇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일 만한 부류 중의 하나가 평소에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해 보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체제로 섹스로봇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섹스로봇과의 관계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다른 인간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회피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¹¹

리처드슨의 원래 논증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섹스봇-사용자와 섹스노동자-매수자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②의 전제를 강화하기 위해, 섹스봇을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역학을 상징적으로 모방하고 승인하는 표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섹스로봇이 특정한 유형의 문제시 되는 성적 상호작용이나 그와 연관된 성적 규범을 장려하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상징과 상징이 산출하는 결과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우려들이 정당한 것이라면, ①과 ②의 전제에서 ③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정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IV. 상징 논증의 평가

③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문의 시작부에서 언급한 리얼들에 대한 비판을 섹스봇에 대입하여 살펴보자. 이는 다음의 네 가지 논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 ⑤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 ⑥ 동의 규범의 무시 및 강간 문화의 연장
- ⑦ 특정한 모방에 따른 개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
- ⑧ 아동의 신체를 모방하여 소아성애를 상징

11. 물론 이를 꼭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먼저 ⑦과 ⑧은 섹스봇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제작된 일부 유형의 섹스봇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논점이다. 물론 섹스봇이 이들 논점의 비윤리성을 더욱 첨예한 방식으로 재현하기는 하지만, 섹스봇 자체에 내재한 고유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섹스봇과 무관한 맥락에서 누군가 타인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소아성애를 조장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방식의 인격권 침해나 소아성애와 관련된 일탈적 행위는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나 법률로도 이미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미 수용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⑦과 ⑧에 해당하는 섹스봇의 제작이나 사용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섹스봇 논쟁에서 ⑦과 ⑧에 해당하는 섹스봇은 중심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일종의 논점 흐리기(red herring)로 볼 수 있다. 만일 일부 왜곡된 욕구의 소유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섹스봇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보자. 만일 이런 논증이 수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적 대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증을 주장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주방용 식칼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증을 펼친다고 해보자. 식칼은 사람을 상해하는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흉자는 식칼의 경우 그것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용의 맥락에 있지만, 섹스봇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섹스봇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용의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에 관한 판단은 ⑤와 ⑥의 논점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결국 '문제시되는 상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섹스봇 일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⑤와 ⑥의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고려하는 섹스봇의 범위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모방한 로봇은 배제된다.¹²

12. 익명의 심사자가 섹스봇이 아동을 모방한 경우, 그것을 금지하는 근거는 그것이 소아성애를 상징하기

상징은 크게 상징적 대상, 해석자, 해석의 근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¹³ 현재 논의의 맥락에서 상징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섹스봇이며, 이는 주로 '성적 노리개로서의 여성'이나 '동의 규범'을 무시하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현재 개발되거나 시판 중인 섹스봇은 대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령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섹스봇은 주로 포르노 배우를 모델로 하여 성적 특징들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형화되어 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를 재현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현실 속의 여성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서, 미적 기준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섹스봇 자체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대중문화 일반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관행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섹스봇의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한 가지 이유는 그 재현 방식이 훨씬 더 노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단지 정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고 섹스봇을 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적임을 감안하면, 그것 때문에 섹스봇이 다른 문화적 재현의 양식들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나 미적 기준의 왜곡 같은 문제의 상징은 오히려 훨씬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파급력을 갖는 영화나 드라마, 대중음악과 같은 대중문화 장르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처럼 보인다.

아마도 섹스봇의 경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외모처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대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전제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중문화에서 접하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과 상징 대

때문이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식칼의 오용 가능성의 사례는 이 논의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당연히 ⑥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징이다. 본문의 논의의 핵심논점은 ⑥의 사례가 갖는 소아성애의 상징이 모든 섹스봇이 공유하는 상징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칼의 사례는 섹스봇이 소아성애를 상징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섹스봇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13. 피어스(Peirc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징의 구조나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Danaher J., "The Symbolic-Consequences Argument in the Sex Robot Debate"의 p. 112를 참조하라.

상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섹스봇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성적 행위로 실제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섹스봇과의 성적 접촉이 대개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수행될 것이므로, 시각이나 촉각의 감각적 매개 양상의 차이가 중요한 함축을 지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섹스봇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성적 동의 규범의 무시를 상징한다고 여겨지며, 물리적 접촉에 따른 인과적 효과가 더 강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된 이슈에서, “리얼돌은 ‘동의’ 절차를 무시한 ‘강간 문화’의 연장이며, 그것의 합법화는 성폭력 같은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바로 그런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상징은 상징적 대상, 해석자, 해석의 근거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문제는 해석자에 따라 그 상징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기티우나 리처드슨 혹은 리얼돌의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섹스봇이 과연 동의 규범에 대한 무시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성폭력 같은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다분히 다른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관건은 어떤 해석이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더 잘 뒷받침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가령 섹스봇이 성폭력 같은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경험적인 예측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인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주장으로 포르노의 확산이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는 여성에 대한 성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에 좀 더 관대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포르노가 성범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 결과 포르노와 성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규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증론으로 보인다.¹⁴

14. 포르노와 성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는

섹스로봇이 '강간 문화'의 연장이라는 주장은 훨씬 더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장이다. 물론 강간 환상(rape fantasy)의 실현을 위해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섹스로봇이 강간 문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일반화에 해당한다. 더구나 “섹스로봇이 ‘동의 규범의 무시’나 ‘강간 문화’를 상징한다”라는 주장은 어떤 경험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 다분히 섹스로봇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섹스로봇 사용자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실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섹스로봇과 성범죄 증가 사이의 상관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증거의 축적을 통하여 이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 합의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¹⁵

여기서 비판자들의 주장을 우호적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를 사용자가 현실에서 섹스로봇을 소비하는 방식이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성 인식이나 ‘동의 규범’에 대한 당위적 제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섹스로봇이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부정적 상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부정적 상징에 대한 비판자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고 해보자. 즉 앞의 논증에서 제시된 ③의 중간 결론을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섹스로봇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으로부터 섹스로봇의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④의 최종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지는 전혀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문제가 상징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

Danaher, J. & Brian Earp & Anders Sandberg의 논문 p. 58의 각주 35, 36, 37에 제시된 목록을 참조하라.

15. 랭카스터-제임스와 벤틀리는 리얼돌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리얼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해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사용자가 비-성적이고 포스트휴먼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이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순전히 사용자의 대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그 분석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Lancaster-James M. Bentley GR. (2018) 참조. 리얼돌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또한 Kate Devlin의 논문 “The Ethics of the Artificial Lover”, p.277의 논의를 참조.

분은 그러한 부정적 상징이 섹스봇의 내재적 특징이어서 섹스봇과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인지일 것이다. 만일 섹스봇이 재현하는 것으로 상정된 그러한 부정적 상징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섹스봇을 사회적으로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섹스봇이 갖는 부정적 상징 효과나 그로부터 귀결되는 해악은 개선 불가능한가? 만일 그 부정적 상징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섹스로봇의 상징성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강한 금지가 아니라 규제적 접근일 것이다.

V. 상징의 개선

상징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징의 의미는 사회, 문화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는 우연적인 것이며, 그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급진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섹스로봇에 성적 노리개로서의 여성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부착된 문화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로봇과의 섹스가 그런 부정적 함축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반려 관계를 상징할 수도 있다.¹⁶

또한 이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섹스로봇이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이다. 섹스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으로는 '적극적인 성적 권리의 만족', '쾌락의 증가', '성적 접근 가능성의 개선과 불평등의 해소', '파트너 사이의 성적 긴장의 해소', '다양한 성적 경험의 추구', '특정 형태의 성적 자기표현이나 정체성 표출에 기여' 등이 거론된다. 혹자는 섹스로봇의 사용이 강간욕망이나 소아성욕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

16. 익명의 심사자가 섹스봇에 부착된 상징이 필연적은 아닐지라도 현재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긍정적 상징으로의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지 답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간이 섹스로봇과 같은 인공지능과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휴먼적 반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임을 밝혀둔다.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¹⁷

섹스로봇은 직접적인 쾌락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섹스를 좋은 것으로 여기며, 더 많은 섹스가 있는 삶을 그렇지 않은 삶보다 선호한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섹스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¹⁸ 섹스로봇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경험의 절대 양을 늘릴 것이며, 따라서 쾌락 만족의 양과 전반적 행복의 정도를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높은 성적 활동은 체중의 감소, 낮은 스트레스 수준, 전립선암의 감소, 더 나은 심장 상태나 혈압, 수면과 상관되어 있으며, 결국 성적 만족도의 증가는 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섹스로봇의 유익함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성적 불평등의 해소에 대한 부분이다. 섹스는 인간 삶의 복지나 번영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WHO는 1997년 13회 세계 성학회(World Congress of Sexology)에서 채택한 <성적 권리 선언(Declaration of Sexual Rights)>¹⁹을 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성 건강은 기본적인이고 근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성은 인간 사이의 가장 깊은 유대감의 근원으로 개인, 커플, 가족 및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이며, 자위를 포함한 성적 즐거움은 물리적, 심리적, 지적, 영적 행복(복지)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 선언문은 성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모든 수단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강요된 성적 박탈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비 불균형과 같은 인구 통계적 이유 때문에 상대를 구할 수 없는 이성애자, 지역이나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적절한 상대를 만날 수 없는 성적 소수자, 외모나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성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 있다. 섹스 로봇의 도입

17. 섹스로봇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Neil McArthur, “The Case for Sexbots”과 Ezio Di Nucci, “Sex Robots and the Rights of the Disabled” in Danaher & McArthur, 2017을 참조하라.

18. D. G. Blanchflower & A.J. Oswald,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 2004, pp. 393~415; Neil McArthur, 위의 글에서 재인용.

19. 1997년의 “성적 권리 선언”은 모두 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년에 수정된 버전은 총 16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성적 불평등의 경감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섹스로봇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성적 기회 박탈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경감에 대해 섹스로봇이 갖는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섹스로봇은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불평등을 산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섹스로봇을 임대하는 서비스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구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제도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상징은 분명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지만, 동시에 섹스로봇이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징의 의미를 개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언제나 사회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대체로 현실적인 대응책은 그 부정적 가능성에 집중하여 기술의 도입을 거부하기보다, 가능한 혜택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이나 실천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섹스로봇이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나 사회적 태도의 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섹스로봇이 긍정적인 성적 규범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아마도 일차적인 개선의 대상은 섹스로봇의 외양이나 형태일 것이다. 섹스로봇이 지금과 같은 전형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부분 성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고착화된 편향적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르노 스타일을 벗어나 ‘실제’ 여성에 가깝게 생기고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보다 진취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케이트 데블린(Kate Devlin)은 섹스로봇이 여성의 외관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일 뿐이며, 그것이 꼭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²⁰

특히 문제가 되는 ‘성적 동의’의 규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섹스로봇은

20. Kate Devlin, "The Ethics of the Artificial Lover", pp. 278~282.

리얼돌과 달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우리는 섹스로봇이 성적 동의나 인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규범을 표상하도록 만들 수 있다. 가령, 로봇이 때로는 무작위적으로 사용자를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나 적극적인 긍정의 동의 신호를 구해야만 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²¹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규범을 교육하거나 가부장적 여성 혐오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피이터스와 하젤라거는 덕 윤리에 입각한 섹스로봇의 개발을 주장하면서, 동의-모듈을 장착한 섹스로봇이 사용자에게 연민(compassion)의 감정을 배양하는 치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²²

VI.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우리는 먼저 섹스로봇에 대한 리처드슨의 비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리처드슨의 논증은 섹스로봇과 성노동자 사이의 유비에 입각한 비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유비 관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의 비윤리성보다는 섹스로봇의 상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섹스로봇의 문제시되는 상징에 대한 비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얼돌에 대한 비판적 논점들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상징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의적일 수 있으며, 각각의 입장이 의존하는 증거조차도 논쟁적이어서 이 쟁점에 대해 합의된 견해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섹스로봇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나 동의 규범의 무시와 같은 부정적 상징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는 섹스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섹스로봇의 부정적 상징을

21. 한 익명의 심사자는 동의 모듈의 장착은 반대로 사용자가 로봇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로봇 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을 거친다면, 사용자가 동의를 무시한 성적 행위를 시도할 경우에 로봇이 작동을 완전히 멈추도록 하는 루틴을 추가하거나, 또 그 행위를 관련 회사나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22. Peeters, A., Haselager, P., "Designing Virtuous Sex Robots", *Int.J of Soc Robotics* 13, 2021, pp. 55~66.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규제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섹스로봇은 이미 등장한 현실이다. 이는 그것을 요구하는 현실적 요구가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금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술의 미래적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이나 성에 관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이와 관련된 최근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 등을 통합해 지칭하는 말)로 대표되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다. 섹스로봇에 대한 논쟁도 단순히 금지와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섹스로봇 사용자를 비정상적 욕구를 가진 잘못된 사람들로 낙인찍어 새로운 형태의 성소수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새로운 현상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프레임에 포획되지 않고 논의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태인, 「리얼돌 판매길 열어준 대법… ‘성기구’ 24번 언급에 이유있다」, 『중앙일보』, 2019.8.1. (<https://news.joins.com/article/23541497>, 2020년 9월 27일 접속)
- 유지영,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 23만명 돌파… “여성혐오와 직결된 물건”」, 『오마이뉴스』, 2019.8.2. (<http://omn.kr/1k9nc>, 2020년 9월 27일 접속)
- _____, 「“섹스돌이 성범죄 감소시킨다? 구매자들이 뭐라는지 보라”」, 『오마이뉴스』, 2019.8.12. (<http://omn.kr/1kejf>, 2020년 9월 27일 접속)
- Danaher, J. & Neil McArthur (Eds.), *Robot Sex: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MIT Press, 2017.
- Danaher, J. & Brian Earp & Anders Sandberg, “Should We Campaign Against Sex Robots?” in Danaher and McArthur, 2017.
- Danaher, J., “The Symbolic-Consequences Argument in the Sex Robot Debate” in Danaher and McArthur, 2017.
- Devlin, K., *Turned On: Science, Sex and Robots*, Bloomsbury Sigma, 2018.
- _____, “The Ethics of the Artificial Lover”, in S. Matthew Liao (eds.),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xford Univ. Press, 2020.
- Sinziana Gutiu, “Sex Robots and the Robotization of Consent,” We Robot Law Conference Miami, 2012.
- Langcaster-James M, Bentley GR., “Beyond the Sex Doll: Post-Human Companionship and the Rise of the ‘Allodoll’”, *Robotics*, 7(4):62, 2018. <https://doi.org/10.3390/robotics7040062>
- Levy, D., *Love and Sex with Robots: The Evolution of Human-Robot Relationships*, Harper Perennial, 2008.
- _____, “The Ethics of Robot Prostitutes” in Patrick Lin et al (eds.), *Robot Ethics: The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Robotics*, MIT Press, 2012.
- Peeters, A., Haselager, P., “Designing Virtuous Sex Robots”, *Int J of Soc Robotics* 13, 2021, pp. 55~66. (<https://doi.org/10.1007/s12369-019-00592-1>)
- Richardson, K.,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Parallels Between Pro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x Robots”. *SIGCAS Computers & Society*, Vol. 45, No. 3, 2015, pp. 290~293.

Abstract

The Problem of Symbolic Representation with Sex Robots

Shin, Sangkyu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Rec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Real Doll in Korea. It seems that there has never been such a hot discussion in Korea regarding adult products. The above criticisms on real dolls are objections that can be applied to sex robots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ose objections in relation to sex robots, and tries to assess the limit of the individual's sexual freedom that can be socially recognize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easons for favor or disagreemen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ex robots, centering on Kathleen Richardson's view, and evaluates its justific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mplied by Richardson's criticism is the symbolism of sex robots. It is criticized that sex robots are a symbol that promotes distorted perception of sex by sexually objectifying women, and that ignores the norm of gender-related consent norm of sex. This paper focuses on criticism of sex robots based on symbolism in particular, and considers how to circumvent such criticism.

Keywords: Real Doll, Sex Robot, Symbolic Representation, Symbolic Consequence Argument, Consent Norm

논문 투고일 : 2021년 03월 02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10일